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원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44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5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5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9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6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20
1. 정의	20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9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
4.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34
5. 탈시설 절차	41
6. 탈시설 지원 등	46
7. 시설 폐쇄 및 단계적 조치	53
8. 벌칙	61
9. 부칙	63

I. 개요

1. 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44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등 39인
- (2) 제 안 일 : 2025. 10. 1.
- (3) 회 부 일 : 2025. 10. 2.

나. 제안이유

한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일반논평 5호(2017)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종식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1개의 방에 평균 4.7명이 거주하고, 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6.7명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입소기간은 18.9년에 달함.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도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에 생활하는 장애인은 정부의 탈시설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음.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둔(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2)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4)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장애인과 법정지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탈 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5) 시·도지사는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을 수립하여 소득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 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 스 이용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35조까지).
- (6)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의 정도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장애인 생 활시설의 탈시설 상황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장애인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하여 2041년 이내에 모든 형 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폐지하여야 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입소를 제한하여야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목표달성연도 이 내에 폐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에 따라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과 그 생활시설의 운영자 에게 단계적 조치를 명하여야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시설 또는 인권침해시설 등에 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안 제42조 및 제43조).
-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의 이행에 따라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적절히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가족, 근로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피해생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Ⅱ.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수용 종식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및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총 6개 장, 54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됨.

< 제정안의 체계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법정지원인의 책무)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관 및 업무 등	제9조(탈시설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10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제11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의 구성)
	제12조(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제13조(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제3장 탈시설 지원	제14조(탈시설에 관한 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15조(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제16조(탈시설 지원의 신청)
	제17조(탈시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제18조(탈시설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제19조(탈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제20조(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21조(탈시설 지원)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제23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준비 의무)

	제24조(단기체험 프로그램)
	제25조(긴급탈시설지원)
	제26조(정착지원)
	제27조(지원주택 공급)
	제28조(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제29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30조(자립정착금 지원)
	제31조(소득보장 지원)
	제32조(공공일자리 등 고용 지원)
	제33조(평생교육, 주간활동 및 돌봄 지원 등)
	제34조(의료 지원 등)
	제35조(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제36조(탈시설지원 모니터링)
	제37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 평가·보고)
제4장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등	제38조(단계적 조치의 목표달성연도)
	제39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 및 입소 제한)
	제40조(단계적 조치의 계획)
	제41조(단계적 조치의 명령)
	제42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폐쇄)
	제43조(보조금 지급 중단)
	제44조(타 시설로의 전원조치 금지)
	제45조(단계적 폐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46조(시설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 지원	제49조(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의 보호)
	제50조(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제51조(인권침해시설 거주 피해생존자를 위한 임시조치)
제6장 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장애인 생활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

활시설 등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형태의 주거제공 시설로 정의하고,

‘탈시설’을 장애인이 이러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 자신의 주거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규정함.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탈시설 정책방향·예산지원·시설감축 목표연도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셋째, 국무총리 소속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탈시설 정책의 심의·의결 및 추진체계를 마련함.

넷째,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이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탈시설 대상자를 조사·선정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두는 등 탈시설 관련 절차를 규정함.

다섯째, 탈시설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소득·활동지원·건강관리 등 자립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41년까지 폐지하도록 하고, 신규 설치 및 입소를 제한하는 등 시설수용 종식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

일곱째,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함.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제1조)	•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시설수용의 종식과 사회의 완전한 참여 및 통합을 실현
정의 (제2조)	• 장애인: 사회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 •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형태의 주거제공 시설 •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 자신의 주거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 • 인권침해시설: 체벌·폭행·성범죄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시설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장애인 생활시설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9조~제13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탈시설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무총리 소속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설치 • 중앙·지역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탈시설 절차 (제16조~제20조)	•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이 탈시설 지원 신청 • 탈시설 의사 및 욕구조사 실시(시·도지사) • 탈시설 대상자 선정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시·도지사) • 탈시설 지원 대기목록 작성·관리(시·도지사)
탈시설 지원 (제21조~제35조)	•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 • 주거·소득·활동지원·고용·건강관리 등 자립정착 서비스 제공 • 단기체험 프로그램, 긴급탈시설 지원, 정착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규정
시설 폐쇄 및 단계적 조치 (제38조~제48조)	•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2041년까지 모든 시설 폐지 • 신규 설치·입소 제한 및 단계적 조치 명령 • 명령 불이행 시설에 대한 보조금 중단·폐쇄 명령 • 시설종사자 고용안정 및 시설거주장애인 가족 지원대책 마련
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 지원 (제49조~제51조)	• 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가해자 분리 및 임시보호조치 실시 • 피해생존자 보호를 위한 쉼터 지원 및 재활·자립지원 조치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 2008년 12월, 우리 국회가 비준하여 2009년 1월부터 발효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¹⁾은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 권리 및 자유의 보장을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으로, 동 협약 제19조에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립생활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포괄적 해석 및 당사국이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구성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일반 논평(General Comments) 제5호」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시설 입소의 단계적 폐지 및 법적·행정적·예산적 조치 마련이 당사국의 즉각적 의무로 제시되었음.

한편,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 on Deinstitutionalization)」²⁾에서는 당사국에 대해 시설수용 종식과 즉각적 탈시설, 개별화된 지역사회 기반 지원, 탈시설 과정의 장애인 당사자 전면적 참여를 요구하였음(참고자료 1: 관련 내용 원문 번역본).

1)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 2006년 12월,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됨.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전 세계적 조사를 통해 ‘시설 보호 모델’의 한계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7개 지역 500여 명의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마련된 지침임. 총 12개 장 14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관련 국제규범 비교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2006)	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제5호 (2017)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2022)
•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립생활 보장 • 주거 지원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 제공 의무 명시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참여 보장 • 시설 입소의 단계적 폐지 및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법적·행정적·예산적 조치 의무화	•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 종식 및 즉각적 탈시설 촉구 • 시설수용: 모든 형태의 구금(정신병원·요양원·그룹홈·쉼터 등 포함) • 탈시설: 장애인이 어디서·누구와·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율성과 선택권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모두가 행복할 권리: 사례로 보는 UN장애인권리협약,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이해하기 쉬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호~5호, 한국장애포럼. (202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전문, https://thekdf.org/UN_CRPD/1659(검색일: 2025. 10. 5.)

□ 이에 우리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 ~ 2027년)을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화 및 전국적 확대를 도모하며,

기존 거주시설과 관련해서는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향후,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것을 표명한 바 있음.

□ 그 결과, 제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제정안 2건³⁾이 발의되어, 2차례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논의 후,⁴⁾ 이를 통합·조정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라 함)이 2025년 3월 제정되어,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는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과 주거전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자립지원 신청·조사·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서비스 제공 등 자립지원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거주시설의 장애인에 주거전환 지원에 대한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제정안은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를 ‘탈시설’로 확장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 인권침해시설 대응, 탈시설 과정에서의 종사자·가족 지원 등 시설수용의 종식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보다 강화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2006), 일반논평 제5호(2017),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 등에서 당사국에 요구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 원칙을 반영하는 등,

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37호,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4. 7. 1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2591호,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2024. 8. 6.)

4)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22.)

시설과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즉,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자립과 주거전환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 제정안은 거주시설뿐 아니라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형태의 시설을 포괄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감축에서 폐지까지 이르는 전면적 구조 전환과 피해생존자 지원 및 인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참고자료 2: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과 제정안 조문대비표).

< 제정안과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체계 비교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총 6장, 54개 조문	총 6장, 38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법정지원인의 책무)	제7조(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보호자의 협력)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제2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관 및 업무 등	제2장 기본계획 등 자립 지원 체계
제9조(탈시설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10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제10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제11조(자립 지원 실태조사)
제11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의 구성)	제12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심의)
제12조(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제13조(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제13조(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제14조(자립 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15조(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제16조(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제3장 탈시설 지원	제3장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제14조(탈시설에 관한 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17조(상담 및 정보제공)
제15조(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제18조(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제16조(탈시설 지원의 신청)	제19조(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제17조(탈시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제20조(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제18조(탈시설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제21조(자립지원대상자 선정)
제19조(탈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제22조(이의신청)
제20조(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23조(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제21조(탈시설 지원)	제24조(단기 체험 시설 설치·운영)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제25조(자립 준비 지원)
제23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준비 의무)	제26조(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제24조(단기체험 프로그램)	제27조(지역사회 자립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25조(긴급탈시설지원)	제28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제26조(정착지원)	제29조(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제27조(지원주택 공급)	제30조(자립 지원 상황 평가·보고)
제28조(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제31조(자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제29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4장 지역사회 주거 전환 지원
제30조(자립정착금 지원)	제32조(주거 전환 지원)
제31조(소득보장 지원)	제33조(주거 전환 평가)
제32조(공공일자리 등 고용 지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제33조(평생교육, 주간활동 및 돌봄 지원 등)	
제34조(의료 지원 등)	
제35조(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제36조(탈시설지원 모니터링)	
제37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 평가·보고)	
제4장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등	
제38조(단계적 조치의 목표달성연도)	
제39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 및 입소 제한)	
제40조(단계적 조치의 계획)	
제41조(단계적 조치의 명령)	
제42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폐쇄)	
제43조(보조금 지급 중단)	
제44조(타 시설로의 전원조치 금지)	
제45조(단계적 폐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46조(시설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 지원	
제49조(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의 보호)	
제50조(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제5장 보칙
	제34조(지도와 감독)
	제35조(보고와 검사)
제6장 벌 칙	제6장 벌칙
제52조(벌칙)	제36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부 칙	부 칙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① 장애인 거주시설뿐 아니라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범위, ② 장애계와 보호자·시설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간 상당한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는 ‘탈시설’ 용어 사용, ③ 신규 시설 설치 금지 및 입소·전원 제한 등과 같은 규정의 헌법상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 침해 가능성, ④ 자립지원과 탈시설 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정착금·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주거유지 서비스 등 주요 지원 항목이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과 중복되는 측면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청원번호 제2200155호)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고려하면, 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제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의해 시설 거주 장애인 및 긴급하게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재가 장애인 포함)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여전히 시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장애인이 존재하므로, 시설 축소 및 2041년까지 모든 시설을 폐지하기보다는 자립지원 정책과 함께 시설 전환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주시설 입소라는 선택권을 제한(신규 설치 및 입소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박탈(완전한 폐쇄)하는 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의 반대, 돌봄 공백 우려가 예상되므로, 법률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현재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폐지 청원(거주시설이 용자부모회)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 또한,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시설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 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감축 및 폐지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한편, 장애인 생활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시설의 ① 신규 설치 및 입소 제한, 폐지, ② 인권침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지원 및 조치 관련 조문은,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의 상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 내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나. 기획예산처

-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과 관련하여 장애계 등의 찬반 의견 고려 시 법률 제정 관련 폭넓은 사회적 논의 선행이 필요함.
 -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장애인지역사회 자립법 폐지청원, 장애인거주시설협회 반대의견 지속 제기 등
- 최근 제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25.3.) 등에 동 법률 제정안에 규정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별도 법률 제정 실익도 낮음.

다. 법무부

- 안 제8조: 특별법·신법 우선 원칙을 벗어나 “장애인 권익에 더 부합”이라는 기준만 제시하여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약화하고 행정기관 재량에 따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특별법 우위 명시 등 보완 검토가 필요함.
- 안 제16조·제20조: 서면주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면 장애인에게 인지적·물리적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두진술·방문 접수 등으로 유연하게 하고 행정청 책임 아래 공식 서면 기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7조: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임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급 주택의 장애친화적 주거환경 등 조건을 하위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9조제1항: 법인·개인까지 시설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배 우려가 있고 치료·재활상 더 우수한 복지시설 설치까지 금지되면 후행적 효과가 우려됨.
- 안 제39조제2항: 시설의 확대·운영유지 예산 지원을 전면 금지하면 거주 장애인의 인권수준 악화 우려가 있어 순차적·단계적 지원의 감소가 필요함.
- 안 제41조·제42조: 조치명령·폐쇄명령 위반 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과도하여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 안 제44조: 폐쇄 후 즉시 자립 곤란한 경우에도 전원·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유기 위험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경과규정·한시적 보호조치 등 예외규정이 필요함.
- 안 제53조: 양벌규정은 사회복지단체·관련업 종사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50조: “지체없이”와 “3일 이내” 병기는 법적 모순으로 지연면책 효과 우려가 있어 즉시 조치 수준으로 다른 학대 방지 법률과 동일한 조정이 필요함.

라. 국토교통부

-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제정안 제27조제1항1호, 제2호, 제3호 관련, 다른 주거취약 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 현재 입주자 대기수요⁵⁾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특별(우선)공급 외,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관계 단체

- 시설의 단계적 감축과 폐지를 주장하는 찬성 의견과 현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음.
- (찬·반) 거주시설 입소는 장애인의 선택이 아니므로, 시설의 단계적 감축과 폐쇄를 목표로 하는 제정안에 찬성, 거주시설 입소라는 선택권을 제한(신규설치 및 입소제한)하고 궁극적으로 박탈(완전한 폐쇄)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반대

찬성 단체명	반대 단체명
(총 11개 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 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총 6개 단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5) 2024년 12월 기준, 82,900명(국토교통부 제출)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란 사회적·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주거지를 제공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 또는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인권침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체벌, 폭행, 학대, 유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장애인 생활시설

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간의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나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장애인 생활시설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하는 장애인을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2) 거주하는 장애인의 통신, 면회, 외출, 외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3) 거주하는 장애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 간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4) 관련 법령에 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5) 거주하는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 그 밖에 관계 행정청 및 수사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6) 거주하는 장애인 소유의 금품, 장애인의 임금,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라.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4.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있는 자신의 가정 등 일반 주거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5. “단계적 조치”란 장애인의 시설 수용 종식을 위하여 목표달성연도까지 단계적으로 취해지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인원의 단계적 감축 및 시설 폐쇄 조치를 말한다.

6. “법정지원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의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자다. 성년인 장애인의 후견인

라. 그 밖에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명하는 사람

□ (안 제2조제1호 장애인)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을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전문과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만이 아닌 사회적·제도적 장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통합 현상으로 인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할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제정안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정의 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탈시설 관련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판단기준을 법률이나 하위법령 등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2조제2호 장애인 생활시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등 장애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⁶⁾를 대상으로 요양·훈련·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⁷⁾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은 2024년 12월 기준, 전국에 총 1,80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약 3만 6천명의 장애인과 약 2만 2천명의 종사자가 입소 및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

기준일: 2024년 12월

구분	개소 수(개)	입소 장애인 수(명)	종사자 수(명)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1,524	26,987	20,34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59	7,566	1,4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주거지를 제공하는 시설	222	1,525	512
합계	1,805	36,078	22,293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소 수, 입소 장애인, 종사자 및 그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제정안의 영향 범위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범위는 장애인당사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제4호 탈시설) 제정안은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 일반 주거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탈시설’로 정의하고 있음.⁸⁾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이라는 용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탈시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본래 탈시설은 1960 ~ 1970년대 미국, 영국 등에서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운동’을 명명하는 용어로 등장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의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개별화된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의 체계적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음.⁹⁾

또한, 최근에는 탈시설을 ‘탈시설화’로 번역하여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만을 탈시설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 등 예컨대, 시설 소규모화 또는 시설 내에서의 개인 선택권 보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등장하였음.¹⁰⁾

8) 참고로,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20호)에서는 탈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9) 국회도서관. (2022). 장애인 탈시설화 한눈에 보기. FACT BOOK 2022-5호.

- ‘deinstitutionalization’은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탈시설화’라고 번역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탈시설’ 용어를 법률의 제명과 법률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의견 대립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장애계 내부와 보호자, 시설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간 찬·반이 여전히 양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탈시설’ 관련 국회입법조사처(NARS) 연속간담회 주요 내용 >

○ 1회(찬성 측): 탈시설의 필요성과 국제적 기준(24.10.29.)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탈시설은 차별금지 즉 평등권에 기반한 관점 필요, 자립성공을 위한 주거지원 일상생활 지원 필요, 복지의 선순환 과정으로 이해 필요,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점은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비선택성, ▲장애개념 및 패러다임은 정상과 비정상, 자립과 의존이라는 이분법이 해체되고, ‘함께 어울려 삶’을 뜻하는 연립(聯立)으로 변화, ▲현재 소요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1.8배 예산으로 자립생활 가능하며, 편익 분석 시 6배 이상 효과적, UN 지침은 비용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배제, 차별 정책 금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이라 할 수 없으며, 입소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35.6%(전체 24,719명 중 6,239명)으로 파악, ▲탈시설은 기본권으로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지원을 의무화하고, 스스로 자립지원서비스 신청이 어렵다면 법률에 의한 의무자가 직권으로 가능해야 함, ▲의료서비스는 지역병원에서, 기본적 생활은 자신의 주택에서 개별지원서비스 강화 필요
-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 ▲장애인의 탈시설은 권리임, ▲탈시설 추진의 법적 근거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제10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강구와 지원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9의2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 등,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이 세계적 흐름, ▲탈시설 관련 국제규약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 5호,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등 ▲제22대 국회에서는 탈시설의 분명한 개념 명시,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당사자 외 엄격하게 규정, 정책 결정 과정에 탈시설장애인 또는 대표조직 참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서비스 필요도를 이

10) 「유동철. (2021).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 비관사회정책, (70), 269-292.」

유로 한 차별금지, '욕구'조사를 '지원'조사로 변경, 탈시설지원에 관한 방해행위와 금지규정, 시설입소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 등 고려 필요

○ 2회(반대 측): '당사자 중심' 주거정책 마련 필요성(24.11.5.)

- (천주교 들꽃마을 원장 이병훈 신부) ▲탈시설 대상이 되는 시설장애인은 이미 노령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시설에 입소하며, 중증·복합장애가 다수, ▲거주시설 612개, 시설장애인 24,214명을 대상으로 한 복지부 조사(2020.9~2021.1.)에 따르면, 시설장애인은 중증(98.3%)이며, 발달장애(80.1%)가 대부분으로 이 중 의사소통가능자 6,035명에 대해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결과, '나가고 싶다'는 33.5%, '그렇지 않다'는 약 59.2%로 나타남, 탈시설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퇴소절차의 적절성, ▲시설퇴소 후, 의료 및 건강관리, 자립생활 여부, 지역사회 정착 정도, ▲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불투명성,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대상 장애인확보가 중요하므로, 무분별한 탈시설 경쟁, ▲지원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 등이 민간 위탁방식이므로, 돌봄서비스 책임소재 불분명,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워 시설에 맡기는 현 상황에서 최종증발달장애인인 자립하여 활동지원의 도움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등이 우려됨, ▲결과적으로 거주시설 당사자에게는 개인주택인지 시설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24시간 의식주의료 통합집중 돌봄서비스'가 필요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 김종인 교수) ▲시설 거주 장애인의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추세, ▲소득보장과 일자리 지원 위주의 서비스로 자립에 대한 지원 필요,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입법과 시행과정에서 당사자 중심의 주거정책 수립 필요,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은 직업능력이 없어서 직업·직무개발이 어려움,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중증장애인 IL센터, 장애인공동체마을(camp hill), 일본의 행복촌, 독일의 치유마을 등과 같은 모델이 우리나라에는 부재함, ▲월평빌라 모델 도입 고려: 평일에는 빌라에서 각자 생활, 주말에는 시설에서 생활 거주시설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모델, ▲활동지원사나 코디네이터들은 자립생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전문성, 책임성이 부족, ▲탈시설이 자립생활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음, ▲탈시설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거주전환을 이루는 것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호에는 우려, ▲주택지원과 활동지원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거주시설에 위탁양육제도 도입하고 경증의 경우는 직업과 연계 지원, 중증의 경우는 병원과 연계한 자립 방안 마련, ▲발달장애, 정신장애, 고령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자립거주 모형 개발 필요

자료: 국회입법조사처(NARS) 연속간담회 「장애인 탈시설 논의와 쟁점」(제2회, 2024.10.29. 및 11.5. 개최)

- (안 제2조제6호 법정지원인) 제정안은 법정지원인을 미성년 장애인의 보호자, 성년인 장애인의 후견인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결정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탈시설 및 자립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의하면 법정지원인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의 지원(안 제5조제3항), 탈시설 지원의 신청(안 제16조제1항),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 신청(안 제22조제8항) 등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법정지원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탈시설 지원의 신청) ① 장애인, 법정지원인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⑧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은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까지 법정지원인에 포함된다면,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사결정이나 탈시설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나 후견인 등이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지원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후견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의 한시적 조치로 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하는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시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현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시설을 폐쇄해 나감으로써 시설 수용을 종식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장애인 복지의 한 형태로 인정하거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신규 입소·전원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시설거주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대표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의료적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을 우선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관한 복지정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 및 시설 폐쇄를 위한 조치 의무, 신규 설치 및 입소·전원 금지와 이러한 과정에서 시설거주 장애인과 대표단체의 참여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종식하고, 모든 탈시설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대표단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관련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 제6조제3항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입소·전원 금지 규정은 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장애인 당사자의 거주이전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¹¹⁾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공익 목적, 필요성 및 비례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에서는 탈시설 추진 과정에서 시설거주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대표단체의 참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탈시설 정책의 당사자인 장애인 가족과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고, 현장 혼선이나 협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설 운영주체 등의 참여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11) 「대한민국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및 시설 폐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지원에 관하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두 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은 장애인 권익에 보다 부합하는 법을 적용한다.

□ 제정안에서는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해석·집행상 모순 또는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및 시설 폐지’에 관해서는 제정안을,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지원에 관해서는 2027년 3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을 우선 적용하되,

두 법률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은 장애인의 권익에 부합하는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두 법률에서의 기본 개념 정의가 일부 중복되면서도 상이한 측면이 있어 적용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예컨대,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장애인’을 정의하고, ‘탈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서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지역사회 자립’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정안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 정신요양시설 등 타 법상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상 ‘거주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두 법의 적용대상이 일부 중첩되거나 달라질 수 있음.

< 두 법률 주요 ‘정의’ 내용 비교 >

제정안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 “장애인”란 사회적·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1호)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1호)
•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있는 자신의 가정 등 일반 주거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4호)	• “지역사회 자립”이란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조제2호)
•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제2조제2호의 각목)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주거지를 제공하는 시설 - 다. 그 밖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 또는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제2조제3호)

□ 이에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권익에 보다 부합”이라는 문언을 통해 동일 사안이 두 법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보충적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치판단적 요소가 있어 해석 주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 과정에서 두 법률 간 중복·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석 지침 또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9조(탈시설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탈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탈시설 한 장애인의 실태·주거·소득·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탈시설 한 장애인 지원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및 목표달성연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생존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관련 부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과 부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①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이하 “중앙탈시설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탈시설위원회는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탈시설 하는 장애인의 주거·소득·활동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및 목표달성연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생존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탈시설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중앙탈시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중앙탈시설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⑥ 중앙탈시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세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탈시설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⑦ 중앙탈시설위원회와 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탈시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탈시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탈시설 장애인 또는 탈시설 장애인단체의 대표
3. 장애인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 장애인 탈시설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12조(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이하 “지역탈시설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탈시설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 및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나 관련 단체 대표자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③ 지역탈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①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의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통합지원센터”)를 업무 수행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통합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 지원
 2.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폐지 실행계획 수립 지원
 3.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고용전환 및 거주장애인 가족지원 등에 관한 총괄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역통합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 조사 및 폐지 계획 수립 지원
 2. 제21조 각 호에서 정한 지원 사항
 3.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전직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 제9조 탈시설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탈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인지역사회자립 지원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탈시설 정책을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의 중기 계획체제로 수립하여,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까지 종합·조정하려는 취지임.

다만, 제정안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근거는 명시하고 있으나, 탈시설 정책의 근거자료 확보와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므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등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¹²⁾

12)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11조(자립 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 (안 제10조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제11조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제정안은 탈시설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단위의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탈시설 정책을 국가 차원의 종합적 조정 체계에서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집행력과 현장성을 함께 확보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연계된 협력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11조13)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중복 수행하지 않도록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의 기능 연계 또는 안건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및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탈시설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나

정한다.

13)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 주체 등 현장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도 포함하여, 시설 전환 및 인력 재배치 등과 관련한 논의가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탈시설 및 자립 지원 관련 사항의 심의’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와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심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장애인탈시설위원회가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가 명확하지 않은데, 탈시설 지원의 신청, 탈시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탈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이의제기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광역 단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3조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제정안은 탈시설 지원정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업무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중앙 센터는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지원 및 시설 감축·폐지 계획 수립을, 지역 센터는 현황 조사, 폐지 계획 지원, 종사자 전직 상담 등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지역통합지원센터 업무 >

구 분	제 정 안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중앙통합지원센터	•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 지원 •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 · 폐지 실행계획 수립 지원 •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고용전환 및 거주장애인 가족지원 등에 관한 총괄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인력의 교육·연수 및 양성에 관한 업무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지역통합지원센터	• 관할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 조사 및 폐지 계획 수립 지원 • 제21조 각 호에서 정한 지원 사항 •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전직 상담 및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립조사 •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립욕구조사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자립 및 주거 전환 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 제23조에 따른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 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상황 평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 · 교육과 정보제공 •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 복지 지원 정보제공, 관련 기관 간 연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	---

이는 기존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중복기관 설치를 방지하고, 탈시설 및 자립 지원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상 통합지원센터의 업무가 주로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시설 감축·폐쇄 등 탈시설 관련 업무 수행 시 권한과 역할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며, 동일 인력이 자립지원과 탈시설 지원을 병행할 경우 업무의 경계와 우선순위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통합지원센터 내 탈시설 전담 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설치 근거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탈시설 절차

제16조(탈시설 지원의 신청) ① 장애인, 법정지원인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탈시설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탈시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지역사회 정착 필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립욕구조사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역통합지원센터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지원계획을 6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장애인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강요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탈시설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지원 대기목록(이하 “지원대기목록”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탈시설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

2. 제17조의 정기조사에 따라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예산·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시설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
3.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 장애인
4.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대기 장애인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기목록 작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기목록에 등록한 장애인이 자립지원 서비스를 신청 후 1년 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탈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지원대기목록 등을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및 법정지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의 기준·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19조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은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신청, 조사 및 선정에 이르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이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지원대기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서는 유사한 절차(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 대기목록 작성, 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자립지원대

상자 선정 등)를 ‘시장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있는 반면,¹⁴⁾

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탈시설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탈시설 지원 대기목록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정안 제18조), 실제 업무 수행 주체와 책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 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시설 및 자립 지원 절차 비교 >

구 분	제 정 안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신청	장애인, 법정지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u>시·도지사</u>에게 신청	장애인, 보호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u>시장등</u>에게 신청
발굴 및 조사	(발굴) <u>시·도지사</u>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 실시하여야 함. (조사) 지역통합지원센터에 의뢰 가능	(발굴) <u>시장등</u>은 매년 정기조사 실시할 수 있음. (조사) 지역통합지원센터에 의뢰 가능
대기 목록 작성	<u>시장·군수·구청장</u>이 작성 ✓ 탈시설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 ✓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예산·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시설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	<u>시장등</u>이 작성 ✓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 ✓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거 공급 상황,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14)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18조(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①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대기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시장등은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 지원 수급 자격, 지원사항 등의 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이하 “자립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자립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욕구조사(이하 “자립욕구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자립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등은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이하 “자립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 또는 보호자는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등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단계적 조치 및 시설 폐쇄에 따른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 장애인 ✓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대기 장애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사람 ✓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상자선정	• 시·도지사가 지원대상자 선정 • (절차 및 방법 등 부령으로 정함)	• 시장등이 지역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 30일 이내 <u>시도지사</u>에게 이의제기	• 30일 이내 <u>시장등</u>에게 이의신청
지원계획수립	• 시·도지사가 지역통합지원센터에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의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통합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의뢰

특히, 탈시설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할 경우, 장애인 복지 행정이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장 중심의 대응이 어렵고 실질적 집행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과 같이 ‘시장등’을 주체로 일원화하여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기목록에 등록된 장애인이 자립지원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1년 이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정안 제18조제3항),

지역별 예산과 인력 여건의 차이를 고려할 때 모든 대기자를 일률적으로 1년 이내 지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완화하거나, 지원 시기 및 우선순위의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탈시설 지원 등

제21조(탈시설 지원)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제22조에 따른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2.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탈시설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4.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탈시설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탈시설 지원대상자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하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에는 소득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가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⑤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은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의료인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⑥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효력을 가진다.

⑦ 시·도지사는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결과를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은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의 방법·절차,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준비 의무) 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제 15조부터 제24조까지의 조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탈시설 업무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이하 “시설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시설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협조
2. 제17조에 따른 시설 장애인 조사 협조
3. 제24조에 따른 단기체험 프로그램 제공 협조
4. 그 밖의 탈시설 준비 및 전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24조(단기체험 프로그램)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탈시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¹⁵⁾은 단기체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단기체험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위탁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체험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단기체험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긴급탈시설지원) 시·도지사는 학대, 재난, 감염병, 보호자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탈시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탈시설을 즉시 지원(이하 “긴급탈시설지원”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제26조(정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확보 및 지원
2.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등 지원
3. 주택 제공 및 주거서비스 지원
4. 지원주택 운영
5. 자립생활주택 운영
6.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7. 자립 정착금 지원
8. 소득 유지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

9.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지원
10. 주간활동, 평생교육, 돌봄 등 낮시간 활동 지원
11.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
12. 행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13.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지원
14. 탈시설 관련 조사·연구·교육
15. 그 밖에 정착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지원주택 공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4.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사회주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 또는 임차보증금, 매월 임차비용 및 개수·보수 비용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생활 유지와 지역 사회에서 자립생활 영위를 위하여 별도의 인력 등을 통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계획 수립·운영, 입주 지원,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적정한 사례관리 등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된 활동지원급여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자립정착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소득보장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애수당 또는 보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공공일자리 등 고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과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의 일정 인원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로 할당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평생교육, 주간활동 및 돌봄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퇴소 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주간활동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돌봄지원 등을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의료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배치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하여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 (안 제22조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제24조 단기체험 프로그램, 제25조 긴급탈시설지원)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탈시설 지원 대상자별로 지역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승인하도록 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대나 재난 등 긴급상황 시에는 즉시 탈시설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별 계획 수립·승인,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긴급탈시설지원 등은 모두 현장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시

15) ‘시장 등’은 제정안 내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 그 범위는 불명확함.

장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주체로 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현장 대응 측면에서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기체험 운영, 긴급지원 등의 주체를 모두 ‘시장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⁶⁾

□ (안 제26조 정착지원 ~ 제35조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제정안은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제26조)·주거지원(제27조 ~ 제28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제29조)·자립정착금(제30조)·소득보장(제31조)·고용 및 낮시간활동·돌봄·의료 지원(제32조 ~ 제35조)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이후, 소득·주거·활동·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단순히 ‘퇴소 이후 생존’이 아닌 안정적·지속 가능한 생활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서도 정착금, 활동지원 추가급여, 주거지원, 주거유지서비스 등 지원 항목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

16)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23조(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애에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단기 체험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등은 관할 지역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단기적인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장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의 장애인학대 및 보호자의 고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협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중 지급, 지원 공백, 적용 주체 혼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在家)장애인으로 자립지원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제정안에 따른 자립정착금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받은 이후에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상 정착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제정안과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상 주요 지원 규정 비교 >

구 분	제정안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적용대상	제26조 ~ 제35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 제27조: 자립지원대상자 ※ “지역사회 자립”이란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주거	제27조: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또는 임대	제28조: 공공주택 등 제공
주거유지·생활서비스	제28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제29조: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 추가급여	제29조: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제27조제3항제1호: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정착금	제30조: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일시불 지급	제27조제3항제2호: 초기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의료 지원	제34조: 시설 퇴소 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 주치의 배치 및 방문진료 실시	제27조제3항제3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재활·발달 지원	제35조: 재활치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행동발달증진센터 등과 연계	제27조제3항제4호: 재활 및 발달지원의 연계

□ 따라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탈시설 지원과 자립지원의 적용
시기와 대상,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립정착금 및 활동지원 추가급여 등 재정지원 항목은 중복지급이
나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기준과 대상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7. 시설 폐쇄 및 단계적 조치

제38조(단계적 조치의 목표달성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41년까지 모든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 및 입소 제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안전상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외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및 이전 등과 같은 시설의 확대나 운영 유지를 도모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생활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입소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단계적 조치의 계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목표달성연도 이내에 폐지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1조(단계적 조치의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에 따라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과 그 생활시설 운영자에게 단계적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적 조치의 명령에는 현원 30명 이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원 100명 이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현원 30명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2. 현원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 법 시행 이후 4년 이내에 현원 30명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계적 조치의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폐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40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의한 단계적 조치 명령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2.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권침해시설
3.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시설거주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생활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폐쇄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보조금 지급 중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타 시설로의 전원조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제41조 및 제42조의 명령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로의 전원이나 재입소, 원가정복귀를 권유하거나 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단계적 폐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의 단계적 조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과 가족, 근로자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이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점차 입소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폐지가 달성되기 이전까지 근로자의 급여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예산 및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시설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시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에 따라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하는 생활시설 운영자의 능력, 해당 지역의 장애인 복지 특성,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현황, 서비스 필요도 등을 감안하여 폐지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시설이나 기타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환 시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③ 생활시설 운영자가 고용 유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시설의 폐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따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해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
2. 새롭게 생기거나 확대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취업 정보 및 기회의 제공

⑤ 제4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생활시설 운영자 및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활시설 운영자 및 시설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시설 운영자는 제41조 및 제42조의 이행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육체적·경제적 방식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라도 부양의 의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시설 운영자는 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설거주장애인이 퇴소 이후 받게 될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대한 정보와 안내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가족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가의 시설 수용 정책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피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등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인이 직접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지원 받기를 희망하고, 가족 등 연고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후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적절한 원가정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 생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단계적 조치 및 폐쇄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정안은 제38조에서부터 제48조까지의 조문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과 최종 폐쇄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폐쇄시설 근로자 및 시설거주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별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8조, 제39조) 제정안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41년까지 모든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입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시설의 확대 또는 운영 유지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시설 입소의 단계적 감축과 신규 설치 및 입소 제한을 통해 시설 중심 보호정책에서 탈시설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환경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입소 제한 규정은 사실상 기존 시설의 증·개축 등 시설 보완을 어렵게 하고, 운영 지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설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공익적 필요성 및 비례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¹⁷⁾

17)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특히, 민간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보상 근거와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설 운영자 등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40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4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 제9조에서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획의 내용에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예산지원’,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및 목표연도’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 종합계획(안 제40조)과 시설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계획(안 제46조)은 이를 별도의 계획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제정안 제9조에 따른 탈시설 기본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이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1조)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원 30명 이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현원 100명 이상 시설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현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시설은 법 시행 후 4년 이내 각각 30명 이하로 감축하는 단계적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대규모 수용 구조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감축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시설 규모별 감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탈시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2024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은 총 1,805개소로 이 중에서 현원 100명 이상은 61개소(3.4%), 3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63개소(14.6%), 30명 이하는 1,481개소(82%)가 운영 중에 있음.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인원별 현황>

기준일: 2024년 12월

구분		개소 수(개)
현원 100명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23
	정신요양시설	37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주거지를 제공하는 시설	1
	소계	61
현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장애인 거주시설	235
	정신요양시설	22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주거지를 제공하는 시설	6
	소계	263
30명 이하	장애인 거주시설	1,266
	정신요양시설	0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주거지를 제공하는 시설	215
	소계	1,481

자료: 보건복지부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에 단계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체 장애인 생활시설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30명 이하 시설 및 30명 이하로 감축한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 조치 명령이 규정되지 않아, 해당 시설이 2041년까지 유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폐쇄·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현원 기준만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을 감축할 경우, 단순 인원 축

소를 통한 형식적 감축(분리 운영, 명칭 변경 등)이 가능해질 우려도 있으므로, 시설 환경·인력 구조 등과 같은 실질적 요소를 함께 반영한 구체적 감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4조)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단계적 조치 및 시설 폐쇄 등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 또는 원가정 복귀 권유·조치 등을 해서는 안 되고 탈시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여야 함.

이는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을 다시 시설로 전원하거나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탈시설의 재시설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다만, 모든 형태의 전원이나 원가정 복귀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즉 장애인이 스스로 시설 입소나 원가정 복귀를 선택하려는 경우까지도 금지된다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또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¹⁸⁾

동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18) 「대한민국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8.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를 위반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예산을 지원받거나 신규 입소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41조에 따른 단계적 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제42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제4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 단계적 조치 및 폐쇄명령 불이행, 전원조치 금지 위반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법인·개인의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의 업무수행과 탈시설 의사 등에 관한 정기조사 협조 불이행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탈시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인의 책임을 병과함으로써 탈시설 관련 정책의 강제력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 제54조의 과태료 규정은 내용과 취지 면에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과 유사하고, 두 법률 모두 지역통합지원센터를 업무수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서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과태료 상한액 1,000만원은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¹⁹⁾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20조제9항²⁰⁾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또한, 탈시설 및 자립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현장 행정 영역으로 제정안에서와 같이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일원화하는 것은 집행 효율성과 현장 대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함.

19)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17조(상담 및 정보제공) ⑥ 누구든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주소지·현재지 또는 거주시설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20조(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⑨ 누구든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자립조사와 자립육구조사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현재지 및 장애인의 거주시설에 대한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 및 폐쇄,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 중앙 및 지역 통합지원센터 설치, 탈시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폐지시설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등 현행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와 예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 법령 제정,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시범사업 운영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제정안 제8조와 제13조에서는 2027년 3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을 인용하고 있으므로,²¹⁾ 두 법률 간 시행 시기와 제도 연계성도 함께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및 시설 폐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지원에 관하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두 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은 장애인 권익에 보다 부합하는 법을 적용한다.

제13조(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①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의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통합지원센터”)를 업무 수행기관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관련 내용 원문 번역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

46. 당사국은 장애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제거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즉각적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가령, 장애인이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부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주거를 확보하거나 거처를 임차하거나 독립에 필요한 일반적 주류 시설·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등을 막는 정책·법률·관행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49. 19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의 존중이란 당사국이 시설입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신규 시설도 당사국에 의하여 설립될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의 개조 또한 시설 거주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급한 조치가 아닌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시설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시설 거주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 시설에서 확장된 이른바 ‘위성’ 주거 형태, 즉 개인적 생활의 모습(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을 취하고 있지만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는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54. 실현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협약에 포함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적, 행정적, 예산적, 사법적, 체계적, 촉진적 및 기타 조치를 도모·촉진·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실현의 의무는 접근 불가능한 주거, 장애 지원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 지역사회 내 접근 불가능한 시설·상품·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막는 현실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58. 탈시설화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변혁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복합적 전략의 일환으

로서 시설의 폐쇄와 시설 수용 제도의 철폐가 포함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예산과 일정이 정해진 개인별 전환계획 및 포용적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광범위한 개인별 지원서비스의 수립이 포함된다. 따라서 탈시설화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조율된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접근은 정부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태도의 적절한 변화, 예산 배정, 구조 개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5호

14. 지원(assistance)을 타인과 의무적으로 공유함,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영향력이 없거나 제한적임, 지역사회 자립생활로부터의 격리 및 분리, 일상 결정에 있어 본인의 통제 결여, 누구와 함께 살지와 관련한 선택권 부족,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무관한 일상의 경직성, 특정한 통제 하에 단체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수행, 동정적 관점의 서비스 제공, 일상 생활 환경에 관리감독, 동일한 환경에 장애인 수의 불균형 등은 시설을 정의하는 특정 요소이다.

15. 장애인 시설 수용은 장애만을 근거로 하거나 “돌봄”이나 “치료” 등 다른 요소와 연결되어 행해지는 모든 구금을 의미한다. 장애 관련 구금은 일반적으로 사회 보호 기관, 정신병원, 장기입원병원, 요양원, 치매병동, 특수기숙학교, 지역사회 기반이 아닌 재활센터, 중간 홈, 그룹홈, 어린이를 위한 가족형 홈, 쉼터 및 보호거주홈, 법의학 정신시설, 전환홈(체험홈), 알비니즘 수용소, 한센인 마을 및 기타 집단 환경들을 포함하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찰, 보살핌, 치료 및/또는 예방적 구금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정신건강시설은 시설 수용의 한 형태이다.

19. 탈시설은 장애인이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자율성과 선택, 의사결정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상호 연결 과정이다.

20. 탈시설 과정은 시설을 관리하고 지속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 수용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이 주도해야 한다. 그들은 환경 보수, 병상 추가 확보,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 전환, 시설명칭 변경, 정신건강 법률의 ‘최소 제한의 원칙’과 같은 기준 적용 등 협약 제 19조에 반하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모두가 행복할 권리: 사례로 보는 UN장애인권리협약,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이해하기 쉬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호~5호, 한국장애포럼. (202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전문, https://thekdf.org/UN_CRPD/1659(검색일: 2025. 10. 5.)

〈참고자료 2: 제정안과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조문대비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총 6장, 54개 조문	총 6장, 38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로 탈시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생존자의 자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설수용의 종식과 사회의 완전한 참여 및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란 사회적·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주거지를 제공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 또는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자립”이란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거 전환 지원”이란 제21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제23조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28조의 장애인주택 또는 자택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3. “인권침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체벌, 폭행, 학대, 유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장애인 생활시설 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간의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나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장애인 생활시설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하는 장애인을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2) 거주하는 장애인의 통신, 면회, 외출, 외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3) 거주하는 장애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 간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4) 관련 법령에 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5) 거주하는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 그 밖에 관계 행정청 및 수사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6) 거주하는 장애인 소유의 금품, 장애인의 임금,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생활시설 라.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4.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있는 자신의 가정 등 일반 주거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5. “단계적 조치”란 장애인의 시설 수용 종식을 위하여 목표달성연도까지 단계적으로 취해지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인원의 단계적 감축 및 시설 폐쇄 조치를 말한다. 6. “법정지원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의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다. 성년인 장애인의 후견인 라. 그 밖에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명하는 사람	
제3조(기본원칙)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의 법적 능력 유무나 의사소통 능력, 연령, 장애 정도, 건강 상태나 의료적 상황, 지원 필요 정도 등을 이유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부정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제3조(기본원칙)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장애인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된다.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함께 거주할 사람(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자신의 이해에 따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⑥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장애인은 모든 사회서비스와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다른 사람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법정지원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본다)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하는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시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현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시설을 폐쇄해 나감으로써 시설 수용을 종식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장애인 복지의 한 형태로 인정하거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신규 입소·전원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시설거주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대표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의 결정 및 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의료적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을 우선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관한 복지정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의료적 필요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 등을 생애 주기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법정지원인의 책무) ① 법정지원인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고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또는 직원은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법정지원인이 될 수 없다.	제8조(보호자의 협력) 보호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및 시설 폐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지원에 관하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두 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은 장애인 권익에 보다 부합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하는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관 및 업무 등	제2장 기본계획 등 자립 지원 체계
제9조(탈시설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탈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탈시설 한 장애인의 실태·주거·소득·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탈시설 한 장애인 지원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및 목표달성연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생존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관련 부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과 부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제11조(자립 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①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이하 “중앙탈시설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탈시설위원회는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탈시설 하는 장애인의 주거·소득·활동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및 목표달성연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생존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탈시설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중앙탈시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제12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심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중앙탈시설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중앙탈시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세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탈시설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⑦ 중앙탈시설위원회와 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탈시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탈시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탈시설 장애인 또는 탈시설 장애인단체의 대표 3. 장애인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 장애인 탈시설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12조(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제13조(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이하 “지역탈시설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탈시설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 및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나 관련 단체 대표자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③ 지역탈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이하 “지역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③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①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의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통합지원센터”)를 업무 수행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통합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 지원 2.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폐지	제15조(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실행계획 수립 지원 3.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고용전환 및 거주장애인 가족지원 등에 관한 총괄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통합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 조사 및 폐지 계획 수립 지원 2. 제21조 각 호에서 정한 지원 사항 3.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전직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인력의 교육·연수 및 양성에 관한 업무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 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립조사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립육구조사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자립 및 주거 전환 준비·전환· 정착 과정 지원 4. 제23조에 따른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 6. 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상황 평가 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과 정보제공 8.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 복지지원 정보제공,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관련 기관 간 연계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탈시설 지원	제3장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제14조(탈시설에 관한 정보의 작성 및 배	제14조(자립 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①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은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전담인력이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탈시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상담자(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을 말한다)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방문한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 협박, 허위정보 제공, 정서적 학대, 방문 거부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 생	제17조(상담 및 정보제공)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 및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 재가(在家)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자립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립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은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가(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을 말한다)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거주시설의 장은 자립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제24조에 따른 단기 체험이용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업무를 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생활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주소지·현재지 또는 거주시설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탈시설 지원의 신청) ① 장애인, 법정지원인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탈시설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①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탈시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지역사회 정착 필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립욕구조사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지역통합지원센	제20조(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시장등은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욕구조사(이하 “자립욕구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터의 장애인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역통합지원센터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지원계획을 6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장애인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강요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제18조제1항의 장애인을 말하며, 제2항에 따라 자립욕구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장애특성 3. 신청인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신청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보호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립 지원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및 제5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자 립조사와 자립욕구조사를 수행할 때에 폭 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현재지 및 장애인의 거 주시설에 대한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 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탈시설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 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지원 대기목록(이하 “지원대기목록”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 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탈시설 지원 신청 을 하였으나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 2. 제17조의 정기조사에 따라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예산·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시설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 3.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 장애인 4.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대기 장애인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기목록 작성의 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 기목록에 등록한 장애인이 자립지원서비스 를 신청 후 1년 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제19조(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대기목록을 작성·관 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 2. 제21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주거 공급 상황,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 자를 선정할 때 지원 대기 중인 장애인이 우선하여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제19조(탈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지원대기목록 등을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및 법정지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의 기준·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립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등은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이하 “자립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립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자립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19조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은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 또는 보호자는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등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탈시설 지원)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제22조에 따른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2.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탈시설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4.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탈시	제23조(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설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애에 탈시설 지원대상자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에는 소득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가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⑤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은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의료인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⑥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효력을 가진다. ⑦ 시·도지사는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결과를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은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따라 자립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애에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관련 급여와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지원 방법 등 2.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개인별 지원계획은 해당 장애인의 자립 예정지역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참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의 승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은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의 방법·절차,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변경·수정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준비 의무) 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의 조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탈시설 업무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이하 “시설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시설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협조 2. 제17조에 따른 시설 장애인 조사 협조 3. 제24조에 따른 단기체험 프로그램 제공 협조 4. 그 밖의 탈시설 준비 및 전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25조(자립 준비 지원) 시장등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 전환 관련 정보의 제공 2. 제24조의 단기 체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 연계 3. 그 밖에 원활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주거 전환 지원) ① 거주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주시설의 장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단기체험 프로그램)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탈시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단기체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단기체험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위탁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체험 제공	제24조(단기 체험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등은 관할 지역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단기적인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단기 체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단기체험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단기 체험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단기체험 제공기관의 지 정 및 위탁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체험 제 공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 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긴급탈시설지원) 시·도지사는 학 대, 재난, 감염병, 보호자 부재 등으로 장 애인의 탈시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탈시 설을 즉시 지원(이하 “긴급탈시설지원”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제26조(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장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의 장애인학 대 및 보호자의 고령, 장애, 질병, 빈곤, 사 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정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확보 및 지원 2.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등 지원 3. 주택 제공 및 주거서비스 지원 4. 지원주택 운영 5. 자립생활주택 운영 6.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7. 자립 정착금 지원 8. 소득 유지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 9.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지원 10. 주간활동, 평생교육, 돌봄 등 낮시간 활동 지원 11.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 12. 행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 특 성을 고려한 지원 13.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지원 14. 탈시설 관련 조사·연구·교육 15. 그 밖에 정착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지역사회 자립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자 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이 이행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지원대 상자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10 호까지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이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2. 초기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에 필 요한 정착지원금 지원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의 연계 5.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제공 및 연계 6.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지원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원주택 공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4.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사회주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 또는 임차보증금, 매월 임차비용 및 개수·보수 비용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한 장애인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인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등에 따른 공공주택 등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이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생활 유지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영위를 위하여 별도의 인력 등을 통	제29조(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① 시장등은 제28조의 장애인주택 또는 자택에서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계획 수립·운영, 입주 지원,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적절한 사례관리 등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된 활동지원급여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자립정착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소득보장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애수당 또는 보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공공일자리 등 고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과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하 공공기관의 일정 인원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로 할당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평생교육, 주간활동 및 돌봄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퇴소 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주간활동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돌봄지원 등을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의료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배치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하여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제36조(탈시설지원 모니터링)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완전한 통합의 달성 정도를 상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 평가·보고)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주의를 확인한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자립 지원 상황 평가·보고)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 및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주거 전환 평가)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관할지역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주거 전환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에는 장애인의 자립의사 등에 관한 조사 결과, 거주시설의 협력, 제32조제2항의 지원에 따른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등	
제38조(단계적 조치의 목표달성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41년까지 모든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 및 입소 제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명에 위해가 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생활 수 있거나, 안전상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외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및 이전 등과 같은 시설의 확대나 운영 유지를 도모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생활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입소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단계적 조치의 계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목표달성연도 이내에 폐지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1조(단계적 조치의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에 따라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과 그 생활시설 운영자에게 단계적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적 조치의 명령에는 현원 30명 이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원 100명 이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현원 30명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2. 현원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 법 시행 이후 4년 이내에 현원 30명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계적 조치의 명령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폐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의한 단계적 조치 명령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2.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권침해시설 3.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시설거주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생활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폐쇄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보조금 지급 중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타 시설로의 전원조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제41조 및 제42조의 명령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로의 전원이나 재입소, 원가정복귀를 권유하거나 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탈시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제45조(단계적 폐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의 단계적 조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거주장애인과 가족, 근로자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이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점차 입소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폐지가 달성되기 이전까지 근로자의 급여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예산 및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시설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시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에 따라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하는 생활시설 운영자의 능력, 해당 지역의 장애인 복지 특성,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현황, 서비스 필요도 등을 감안하여 폐지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시설이나 기타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환 시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생활시설 운영자가 고용 유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시설의 폐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따를 수 있으며, 같은 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해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 2. 새롭게 생기거나 확대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취업 정보 및 기회의 제공 ⑤ 제4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생활시설 운영자 및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활시설 운영자 및 시설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시설 운영자는 제41조 및 제42조의 이행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육체적·경제적 방식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라도 부양의 의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시설 운영자는 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설거주장애인이 퇴소 이후 받게 될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대한 정보와 안내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가족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가의 시설 수용 정책으로 인한 가족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의 심리적 피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등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인이 직접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지원 받기를 희망하고, 가족 등 연고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후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적절한 원가정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 생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단계적 조치 및 폐쇄 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장 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 지원	
제49조(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쇄되는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의 탈시설을 위한 지원조사 2.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의 탈시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에 긴급탈시설지원을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제50조(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 완료 전이라도 지체 없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이 3일 이내에 가해자(피신고인을 포함한 다)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1조(인권침해시설 거주 피해생존자를 위한 임시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인권침해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인 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가 임 시로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 가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기는 것에 동의하 지 아니한 경우 2.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 의 의사에 따라 탈시설을 하거나 다른 시 설로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긴 장애인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원활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중앙통합지원센터, 지역통 합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 을 할 수 있다.
	제35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통합지원센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 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 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장 벌 칙	제6장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를 위반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예산을 지원받거나 신규 입소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41조에 따른 단계적 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제42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제4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제36조(벌칙)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 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 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5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 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 해한 자 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협조하 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 해한 사람 2.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 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 과·징수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441, '25.10.1. 서미화·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5.3.18. 공포, '27.3.19. 시행)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제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